

# 신메이와 CSR 조달 가이드라인

**新明和工業株式会社**

경영기획본부 자재조달부

2023 년 10 월

제 2 판

## 목 차

|                                                |        |
|------------------------------------------------|--------|
| 1. 머리말 .....                                   | 3      |
| 2. CSR 조달 방침 .....                             | 3 ~ 4  |
| 3. CSR/지속가능한 조달 기준 .....                       | 4 ~ 5  |
| 4. 클린 조달 선언 .....                              | 5      |
| 5. CSR 조달의 바람직한 모습 .....                       | 5 ~ 11 |
| <b>【1】 전반</b> .....                            | 5      |
| (1) 법령 준수 .....                                | 5      |
| (2) CSR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의 공유 .....                  | 5      |
| (3)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                          | 5      |
| (4) 보복행위 금지 .....                              | 5      |
| (5) 사업 계속 계획(BCP) .....                        | 5      |
| <b>【2】 환경</b> .....                            | 6 ~ 7  |
| (1) 절전, 절수 등의 에너지 절약 .....                     | 6      |
| (2) 저탄소·탈탄소 에너지 이용 .....                       | 6      |
| (3) 기타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 6      |
| (4) 3R(Reduce, Reuse, Recycle) 추진 .....        | 6      |
| (5) 용기 포장 등의 저감 .....                          | 6      |
| (6) 오염 방지,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및 물 환경에 대한 배려 ..... | 6      |
| (7) 자원 보전을 고려한 원재료 채취 .....                    | 7      |
| (8) 생물다양성 보전 .....                             | 7      |
| <b>【3】 인권</b> .....                            | 7 ~ 8  |
| (1) 국제적 인권 기준의 준수 및 존중 .....                   | 7      |
| (2) 차별·괴롭힘 금지 .....                            | 7      |
| (3) 지역 주민 등의 권리 침해 금지 .....                    | 7      |
| (4) 여성 권리 존중 .....                             | 7      |
| (5) 장애인 권리 존중 .....                            | 7      |
| (6) 아동 권리 존중 .....                             | 8      |
| (7) 사회적 소수자(마이너리티) 권리 존중 .....                 | 8      |
| <b>【4】 노동</b> .....                            | 8 ~ 9  |
| (1) 국제적 노동기준의 준수 및 존중 .....                    | 8      |
| (2)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                        | 8      |
| (3) 강제노동 금지 .....                              | 8      |
| (4) 아동노동 금지 .....                              | 8      |
| (5)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금지 .....                    | 8      |
| (6) 임금 .....                                   | 9      |
| (7) 장시간 노동 금지 .....                            | 9      |
| (8) 직장 안전 및 위생 .....                           | 9      |
| (9)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 .....                         | 9      |
| <b>【5】 경제</b> .....                            | 9 ~ 11 |
| (1) 부패 방지 .....                                | 9      |
| (2) 공정한 거래 관행 .....                            | 10     |
| (3)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 거부 .....                      | 10     |
| (4) 분쟁 및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원재료 사용 .....              | 10     |
| (5) 지식재산권 보호 .....                             | 10     |
| (6) 품질과 제품 안전 .....                            | 10     |
| (7) 책임있는 마케팅(부당 표시 등) .....                    | 10     |
| (8) 정보의 적절한 관리 .....                           | 10     |
| (9) 지역경제 활성화 .....                             | 11     |
| (10) 안전보장을 포함한 무역 관리 .....                     | 11     |
| (11) 공급망의 CSR 추진, CSR 조달 .....                 | 11     |
| <b>【제 2 판 개정 개요】</b> .....                     | 12     |

## 1. 머리말

거래처 여러분, 평소 각별한 협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여러분이 자사의 강점 등 회사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글로벌 사회에서 기후변화 및 인권,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사회의 요구를 파악한 비즈니스 기회와 위험 관리 등 ‘위험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공급망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E(환경), S(사회), G(통치)에 대응하는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당사가 수립한 ‘인권에 관한 방침’은 사업 활동의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거래처 여러분께서도 이 방침을 지지하고 실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조달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규모, 다양한 지역의 공급업체 여러분과 협력하는 가운데, 당사는 최소한의 의무적 규칙인 ‘CSR/지속가능한 조달 기준’과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준수 및 존중, 배려해야 할 사항을 ‘신메이와 CSR 조달 가이드라인’에 정리하였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 당사자로서 지속가능성을 의식한 행동 및 그것을 촉진하는 조직적인 노력, 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공급망을 연결하는 데 당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필수사항을 제시합니다.

당사 각 사업의 사회적 영향도 및 지역별 사회 변화에 따라 ‘기준’을 재검토하므로 공유한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당사 제품, 서비스의 향상과 이를 통한 공급망 전체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급업체 여러분도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사회에 대한 감도를 올려서 위험 관리를 통해 우선시 해야 할 내용부터 활동을 거듭함으로써 당사의 CSR/지속가능한 조달 실현을 위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본서 내용을 지지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CSR 조달 방침

### (1) 파트너십

모든 거래처와 보다 나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2) 오픈 도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경쟁 원리에 입각한 최선의 거래를 합니다.

(3) 공평한 거래관계 유지

모든 거래처와 항상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합니다.

(4) 거래처 선정

거래처 선정은 자재의 품질·납기·가격, 경영 신뢰성 및 기술 개발력, 환경 배려 등의 QCD 및 CSR 평가와 적절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5) 정보 제공, 비밀 유지

거래처의 요구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처의 유용한 정보도 요구하며 제공해 주신 영업비밀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밀 유지에 힘씁니다.

### 3. CSR/지속가능한 조달 기준

(1) 기업 윤리 철저

자사에 적용되는 법령 내용과 동향, 그 정신을 이해하고 준수함(준법)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접대, 선물, 금전 수수, 공여는 하지 않는다는 당사의 ‘클린 조달 선언’을 이해하고 있다.

(2) 반사회적 세력 거부

직원은 반사회적 세력과 개인적, 조직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3) 정보보안 철저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 및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엄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4) 품질 확보

제품, 상품, 서비스의 안전성이 최우선 사항으로 사내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5) 정보 공개

공개해야 할 정보와 기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6) 인권 존중

인권 침해 및 괴롭힘 방지 등의 실행 및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7)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직장 내 근무 환경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사항으로 사내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8) 위험 관리와 교육 철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사내 교육 및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9) 지역사회 기여**

지역과의 공존을 의식한 기여(직원들의 인근 청소 등)를 하고 있다.

**(10) 환경 부하 저감**

환경(지구 온난화, 오염 물질, 자연 환경)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4. 클린 조달 선언**

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절도 및 윤리관’이 요구되고, 공평한 경쟁 원리가 작용하는 건전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품, 서비스 등 구매 거래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 (1) 구매 거래에 종사하는 자는 부적절한 선물, 접대 등을 받지 않습니다.
- (2) 구매 거래에 종사하는 자는 구매 거래처로부터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거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 (3) 구매 거래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5. CSR 조달의 바람직한 모습**

### **【1】 전반**

**(1) 법령 준수**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각국 현지법 및 국제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CSR 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의 공유**

공급망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CSR 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을 공급망 전체가 확인하고 공유하며, 역할에 따라 연계된 조직의 활동 목표 및 계획, 개선 등을 실행하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활동 결과 평가와 결과를 낳은 프로세스의 확인 및 평가에 근거한 개선 등 PDCA 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자사의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4) 보복행위 금지

법령 위반 및 차별, 당사가 제시하는 기준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사업 계속 계획(BCP)

기업이 긴급 사태(자연재해 및 대화재, 테러 등)에 처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직원, 지역, 공급망을 보호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환경**

(1) 절전, 절수 등의 에너지 절약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저탄소형 원재료 사용,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설비 및 물류 도입, 건물 단열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절수도 펌프 등 수도 설비의 가동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2) 저탄소·탈탄소 에너지 이용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 CO2 배출이 적은 연료 등에서 유래된 전기 및 열을 사용하는 등 CO2 배출계수가 낮은 에너지를 이용, 사용해야 한다.

(3) 기타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류 등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면, 비프레온 냉매(자연 냉매)를 이용한 냉동냉장기기 등으로 대체, 탄소 오프셋 활용 등이 있다.

(4) 3R(Reduce, Reuse, Recycle) 추진

Reduce: 제품 제조 시 사용하는 자원량 및 폐기물을 특정, 관리, 삭감할 것.  
내구성이 높은 제품 개발, 제공 및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유지 보수 체제 고안 등에 힘쓸 것.

Reuse: 사용 후 제품과 그 부품 등의 규격 내 반복 사용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제공, 수리 및 진단 기술 개발 등에 힘쓸 것.

Recycle: 폐기물 등을 원재료 및 에너지원으로 유효하게 이용하거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 설계, 사용 후 제품 회수, 재활용 기술 및 장치 개발 등에 힘쓸 것.

(5) 용기 포장 등의 저감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제품 자체의 용기 포장 및 제품을 담은 상자, 수송용 팔렛 등의 포장 및 수송 재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재사용 및 재생 이용하기 쉬운 용기 포장 및 수송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6) 오염 방지,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및 물 환경에 대한 배려

제품 개발, 제조, 상품의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각종 환경법령에 근거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제품에 함유된 것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물 주변 환경에서는 홍수로 인한 수질 오염, 가뭄 시 물의 이용 등 지역에 따른 영향도, 위험 관리로 사용량 및 배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7) 자원 보전을 고려한 원재료 채취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삼림, 해양 등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채취, 재배된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삼림 감소 및 열화 억제(삼림 감소 제로를 위한 활동 보급)의 관점을 포함하여 자원 보전을 고려하여 채취, 재배된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자원 보전 및 재생산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멸종위기 동식물에서 유래된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희소 동식물의 보전, 생물과 그 서식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방법 등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 【3】 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의 준수 및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인권에 관련된 국제적 기준(특히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인신매매 등 금지협약,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2) 차별·괴롭힘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정체성, 장애 유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피부색, 언어, 정치적 및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의 근원, 재산이 원인인 경우를 포함) 어떠한 차별 및 괴롭힘도 배제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 주민 등의 권리 침해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불법 강제 퇴거 및 지역 생활 환경을 현저하게 파괴해서는 안 된다.

(4) 여성 권리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역량강화 및 남녀공동 참여사회 추진,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여성인재 등용 및 육아휴직 확충 등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권: 성 및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자신답게 살아가며,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5) 장애인 권리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6) 아동 권리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노동 금지 외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7) 사회적 소수자(마이너리티) 권리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민족적·문화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LGBT 등),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마이너리티)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존중하고 각 특성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도 배려하면서 이들이 평등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 【4】 노동

(1) 국제적 노동기준의 준수 및 존중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노동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특히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가 제창하는 노동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기본적 권리에 관한 4 가지 원칙, ①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승인, ②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③아동노동의 실질적 폐지, ④고용 및 직업의 차별 폐지(ILO 핵심적 노동기준 포함))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조합 결성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

(3) 강제노동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신분증명서 등의 부당 보관 및 예치금 부당 징수 등의 구속 수단을 이용한 노동 강요, 시간 외 노동 강요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시켜서는 안 되며 인신매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4) 아동노동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그 국가 및 지역의 법정 근로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

(5)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정체성, 장애 유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피부색, 언어, 정치적 및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의 근원, 재산이 원인인 경우를 포함) 고용 및 임금, 노동시간 외 노동조건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6) 임금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간외 노동 등에 관한 적절한 노동협약을 체결하고 가산임금, 지급 방법 등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7) 장시간 노동 금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정 또는 사전에 합의된 노동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삭감하며, 유급휴가 취득 권리를 부여하고 1 주일에 최소 1 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8) 직장 안전 및 위생

안전위생에 관련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안전위생위원회 등의 설치 및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한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 등은 노동자에게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노동환경의 정비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9)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기능실습생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절한 노동관리를 하고 임금 미지급,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외에 여권 등 압수, 강제 귀국, 보증금 징수 등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령 및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해당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운영되는 국가 및 지역의 전통, 직원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일률적인 근로 규칙 등으로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알선, 파견을 받는 경우 해당 알선, 파견을 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배려,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 신청과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 정비 및 권한 있는 노동관계기관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한다.

**【5】 경제**

(1) 부패 방지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뇌물 수수 등 부패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2) 공정한 거래 관행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일본의 독점금지법 및 하도급법 등 경쟁법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등을 준수하고 덤핑,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 담합 등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3)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 거부

폭력단 및 총회꾼 등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4) 분쟁 및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원재료 사용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등에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무장세력 및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등 분쟁 및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분쟁광물 및 그것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조달 경로에서 무장세력 및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것이 없는지 조사하고, 관여가 없음을 밝혀야 하는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5) 지식재산권 보호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제삼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등) 및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품질과 제품 안전

품질 확보는 거래의 기본 전제입니다.

또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품질 보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위험 평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규격에 대한 적합성 및 검증, 안전성심사회 등의 실시를 통해 안전성을 포함한 설계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조 단계에서는 도면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책임 있는 마케팅(부당 표시 등)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에서 정확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 금지하는 부당 표시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허위 표시 등 부적절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별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피하고,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와 사회를 배려해야 한다.

(8) 정보의 적절한 관리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에서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취급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기밀 사항이 사이버 공격 및 내부 부정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안에 관련된 위험도에 따른 정보 접근관리 강화와 유출 방지체제 확립 외에 만약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을 위한 체제 확립 등의 대책에 힘써야 한다.

(9) 지역경제 활성화

제품 개발, 제조, 상품 물류,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거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야 한다.

(10) 안전보장을 포함한 무역 관리

세계 주요국에서는 무기 및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기술이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및 테러리스트 등, 우려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틀(국제수출관리체제)을 만들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수출 등의 관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안전보장 관점에서 무역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역을 해야 한다.

또한, 수입 시에도 수입 금지 및 규제된 화물이 있으며 관세 및 소비세 납부가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1) 공급망의 CSR 추진, CSR 조달

CSR은 자사가 직접 관계하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부품 공급자로부터의 자재 조달, 자사 제품 제조, 물류, 판매 등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공급망 전체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구매 기업이 제품, 자재 및 원료 등을 조달 시 품질, 성능, 가격 및 납기 등 기존의 ‘제품’의 과제 항목에 환경, 노동환경, 인권 등에 대한 대응 등 ‘공급업체’의 과제에 관한 요구를 추가하고, 원재료의 소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추적성을 포함한 CSR 활동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와 접점을 가진 조달 실무자는 CSR에 대한 자사 생각의 방향성 및 가치관, 기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

## 【제 2 판, 개정 개요】

|                                                                                  |        |
|----------------------------------------------------------------------------------|--------|
| 1. 머리말: 【오기 수정, 귀사의 거래처에 대한 요청 추가】 .....                                         | 3      |
| 2. CSR 조달 방침 .....                                                               | 3 ~ 4  |
| 3. CSR/지속가능한 조달 기준 .....                                                         | 4 ~ 5  |
| 4. 클린 조달 선언 .....                                                                | 5      |
| 5. CSR 조달의 바람직한 모습 .....                                                         | 5 ~ 11 |
| 【1】 전반: 【CSR 활동의 이해와 강화를 위한 항목 추가, 항 번호 변경】 .....                                | 5      |
| (1) 법령 준수 .....                                                                  | 5      |
| (2) CSR 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의 공유: 【방침 및 생각, 가치관, 목표 및 계획 등 주지 내용과 행동 일치에 관한 사항 추가】 ..... | 5      |
| (3)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의견청취의 중요성 추가】 .....                                             | 5      |
| (4) 보복행위 금지: 【항 번호 변경】 .....                                                     | 5      |
| (5) 사업 계속 계획(BCP): 【자연재해 등 유사 시 대응 추가】 .....                                     | 5      |
| 【2】 환경 .....                                                                     | 6 ~ 7  |
| (1) 절전, 절수 등의 에너지 절약 .....                                                       | 6      |
| (2) 저탄소·탈탄소 에너지 이용 .....                                                         | 6      |
| (3) 기타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예시 추가, 문구 수정】 .....                                      | 6      |
| (4) 3R(Reduce, Reuse, Recycle) 추진: 【문구 수정】 .....                                 | 6      |
| (5) 용기 포장 등의 저감 .....                                                            | 6      |
| (6) 오염 방지,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및 물 환경에 대한 배려 .....                                   | 6      |
| (7) 자원 보전을 고려한 원재료 채취 .....                                                      | 7      |
| (8) 생물다양성 보전 .....                                                               | 7      |
| 【3】 인권 .....                                                                     | 7 ~ 8  |
| (1) 국제적 인권 기준의 준수 및 존중 .....                                                     | 7      |
| (2) 차별·괴롭힘 금지: 【인권 침해 가담 방지 추가】 .....                                            | 7      |
| (3) 지역 주민 등의 권리 침해 금지 .....                                                      | 7      |
| (4) 여성 권리 존중 .....                                                               | 7      |
| (5) 장애인 권리 존중 .....                                                              | 7      |
| (6) 아동 권리 존중 .....                                                               | 8      |
| (7) 사회적 소수자(마이너리티) 권리 존중 .....                                                   | 8      |
| 【4】 노동 .....                                                                     | 8 ~ 9  |
| (1) 국제적 노동기준의 준수 및 존중 .....                                                      | 8      |
| (2)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                                                          | 8      |
| (3) 강제노동 금지: 【예시 추가】 .....                                                       | 8      |
| (4) 아동노동 금지: 【연령에 관한 사항 추가】 .....                                                | 8      |
| (5)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금지 .....                                                      | 8      |
| (6) 임금: 【문장 보충 설명, 시간외 노동 시 내용 등 추가】 .....                                       | 9      |
| (7) 장시간 노동 금지: 【휴일에 관한 내용 추가】 .....                                              | 9      |
| (8) 직장 안전 및 위생 .....                                                             | 9      |
| (9)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 【지역 전통 및 습관, 직원에 대한 배려 사항 추가】 .....                            | 9      |
| 【5】 경제: 【활동 강화를 위한 항목 추가, 항 번호 변경】 .....                                         | 9 ~ 11 |
| (1) 부패 방지 .....                                                                  | 9      |
| (2) 공정한 거래 관행 .....                                                              | 10     |
| (3)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 거부: 【기준 내용 추가】 .....                                            | 10     |
| (4) 분쟁 및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원재료 사용: 【항 번호 변경, 오기 수정】 .....                              | 10     |
| (5) 지식재산권 보호: 【항 번호 변경, 오자 수정】 .....                                             | 10     |
| (6) 품질과 제품 안전: 【기준 내용 추가】 .....                                                  | 10     |
| (7) 책임있는 마케팅(부당 표시 등): 【항 번호 변경, 보충 설명 내용 추가】 .....                              | 10     |
| (8) 정보의 적절한 관리: 【항 번호 변경, 오기 수정】 .....                                           | 10     |
| (9) 지역경제 활성화: 【항 번호 변경】 .....                                                    | 11     |
| (10) 안전보장을 포함한 무역 관리: 【무역 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 .....                                    | 11     |
| (11) 공급망의 CSR 추진, CSR 조달: 【구매자 기업이 되는 경우의 내용 추가】 .....                           | 11     |